

환경관련 질의 및 회신

금년초 환경청에서 「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설치, 운영지침」을 발간했다. 이 책자 중에 작년 한해동안 환경청에 접수된 질의와 그에 대한 회신부분을 발췌, 게재한다. (편집자 註)

● 질의 1

분뇨처리시설, 쓰레기 처리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설계. 시공업이 영업지역은?

■ 회신

제한없음. 따라서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받는업체는 등록된 환경지청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하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7조, 동법시행규칙 제36조

● 질의 2

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. 시공업의 등록시 자가측정 대행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소재지가 달라도 되나?

■ 회신

가능함. 일반폐기물 설계. 시공업을 등록하고자하는자가 실험실 확보방안으로 환경보전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 대행자와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대행행위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 대행행위가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. 시공업자가 설계.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 행위임으

로 환경청고시 제87-41호 “오염물질 측정대행자의 지정등에 관한업무처리 규정”에 의한 측정대행구역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(관계법령) 환경보전법 제22조의2, 폐기물관리법 제17조, 동법시행규칙 제36조

● 질의 3

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초 허가요건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휴업하여야 하는가?

■ 회신

휴업시에는 당초 허가요건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나, 재개업시에는 당초 허가요건에 맞는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● 질의 4

환경오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. 시공업을 새로이 등록하고자할때 동종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는가?

■ 회신

각각 확보하여야 함.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 및

일반폐기물 설계. 시공업내에 2개업종 이상을 허가
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자격, 기술능력,
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나, 자본금 또는
재산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7조, 제19조 및 동법
시행규칙 제19조, 제32조

● 질의 5

분뇨수집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득한
업체에서 분뇨수집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정화
조 청소운반에 공동사용할 수 있는가?

■ 회신

공동 사용할 수 없음. 분뇨와 정화조 오니는 특성
이 상이하므로 분리수거하여야 한다. 폐기물관리
법 시행규칙 제19조(별표2)의 규정에서 중복되는
부분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함은 사무실, 실험
실, 기술능력 및 실험 기기에 한하므로 운반차량은
적용되지 아니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1조, 동법시행규칙
제19조

● 질의 6

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, 시공과 시공감리를
어떻게 해야 하나?

■ 회신

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, 시공업자에게 위탁하거
나 축산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표준설계도를 참고
하여 직접 설계, 시공할 수 있다. 시공, 감리도 설계,
시공과 동일하다. 즉, 설계, 시공자가 시공, 감리를
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5조, 동법시행규칙
제28조

● 질의 7

특별정소 구역내의 오수정화시설, 분뇨정화조 및
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직접 비
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?

■ 회신

사용할수 없음. 시장, 군수는 특별정소지역내에
서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
할때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
적합하게 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
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36조, 동법시행규칙
제63조

● 질의 8

50인 이하의 차고, 창고의 경우 오수정화시설을
설치하여야 하는가?

■ 회신

50인 이하의 차고, 창고의 경우는 건축 연면적이
1.600m²이상이라하더라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
지 아니하여도 된다. 다만,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
지 아니하는 대신 인원 산정기준에 의한 분뇨정화
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5조, 동법시행규칙
제4조

● 질의 9

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1.600m²이하였으나 증
축으로 인하여 총연면적이 1.600m²을 초과한 경우
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?

■ 회신

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증축
된 면적만큼의 정화조를 설치하면 된다. 다만 증축
된 면적이 1.600m²를 초과하는 경우는 오수정화시
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5조, 동법시행규칙
제4조

● 질의 10

건물신축시 다음 증축건물 면적까지 예측하여
분뇨정화조를 설치하였을 경우 증축할때 다시 분
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?

■ 회신

당초 분뇨정화조 설치시 증축예상면적까지 포함하여 정화조를 설치하고 증축예상 면적 이내로 건축물을 증축한다면 정화조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5조

● 질의 11

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어떻게 하는가?

■ 회신

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수있다. 오수정화시설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고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때마다 제거하여야 하고,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오수정화시설 내부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후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.

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스킴과 침전오니를 모두 제거한 후 10/100에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6조, 동법시행규칙 제13조, 폐기물관리법 제11조, 동법시행규칙 제21조

● 질의 12

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분뇨정화조 용량에 대한 인원상정은?

■ 회신

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은 건축의 용도별로 다르며,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록 “건축물의 용도 및 분뇨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” (KSF 1507)참조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5조, 동법시행규칙 제30조

● 질의 13

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염소소독시 잔류염소농도 및 투여량은?

■ 회신

방류수 소독에 투입할 소독약품의 양은 오수정화시설 규격 및 오수유입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. 일반적으로 염소소독의 경우 잔류 염소량이 0.1~0.2ppm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, 체류시간 15분을 기준으로 할때 2~8ppm(1m³당 2~8g)을 투여하여야 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6조, 동법시행규칙 제31조

● 질의 14

농공지구 입주업체로서 오.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도 별도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?

■ 회신

농공단지의 경우 단지내 발생하는 오수와 폐수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전용 오.폐수처리장을 설치할시에는 당해 단지내의 건물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5조

● 질의 15

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?

■ 회신

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 또는 폐기물관리법이 관계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으로 건축 연면적이 1.600m²이상인 경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첫째, 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우수.오수 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 및 합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. 둘째, 환경처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합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. 셋째, 50인이하의 차고 창고건물

(관계법령)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*